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력자원관리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, 국방부가 운영하는 개방형직위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예산소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. 0. ~ 1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방부령 제 호

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1조제6항 중 “부대건설사업과·국유재산환경과·군주거정책과·군소음보상팀”을 “부대건설과·국유재산과·군주거정책과·환경소음팀”으로, “부대건설사업과장·국유재산환경과장”을 “부대건설과장·국유재산과장”으로, “군소음보상팀장”을 “환경소음팀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3항 중 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관리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
12. 보호구역 등의 설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업무

13. 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

14. 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

15.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

제11조제14항 중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부대건설사업과장”을 “부대건설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유재산환경과장”을 “국유재산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국유재산의 취득·처분(매각은 제외한다)에”를 “국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6.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,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소음보상팀장”을 “환경소음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
2. 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
3. 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
4. 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
5. 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
6. 환경보전시설의 설치·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·조정
7.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·제도 정비
8.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·운용에 관한 업무
9. 소음·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
10.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·시행

11.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·조정

12. 「군소음보상법」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

13.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14.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

15.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·운용·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

16. 주민 보상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

17.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

제18조제1항 중 “군인권개선추진단장·법무관리관”을 “법무관리관”으로 한다.

국방부령 제104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(국방부령 제1081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환경소음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

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
날부터 환경소음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유재산과장이 분장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전력자원관리실장) ① ~ ⑤ (생략)	제11조(전력자원관리실장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전력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·장비관리과·물자관리과·탄약수송관리과·재난안전관리과·군수지능화팀·시설기획과·시설제도기술과·건설관리과· <u>부대건설사업과·국유재산환경과·군주거정책과·군소음보상팀·전력정책과·기반전력계획평가과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를 두며, 군수기획과장·물자관리과장·재난안전관리과장·시설기획과장·시설제도기술과장·건설관리과장·<u>부대건설사업과장·국유재산환경과장·군주거정책과장·전력정책과장·기반전력계획평가과장 및 공통전력계획평가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, 군수지능화팀장 및 <u>군소음보상팀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</u></u></u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대건설과·국유재산과·군주거정책과·환경소음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대건설과장·국유재산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환경소음팀장</u> -----

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환경사무관·항공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⑭ 시설제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⑭ ----- -----.
⑦ ~ ⑫ (생 략)	⑦ ~ ⑫ (현행과 같음)	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⑬ 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⑬ ----- -----.	6. <u>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</u>	<삭 제>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7. <u>보호구역 등의 설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업무</u>	<삭 제>
8. <u>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 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	8. <u>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업무</u>	<삭 제>
9.·10. (생 략)	9.·10. (현행과 같음)	9. <u>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</u>	<삭 제>
11. <u>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</u>	11. <u>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법령의 제·개정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</u>	10. ~ 16. (생 략)	10. ~ 1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2. <u>보호구역 등의 설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업무</u>	⑮ (생 략)	⑮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3. <u>군사시설과 군사기지 보호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</u>	⑯ <u>부대건설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	⑯ <u>부대건설과장</u> ----- -----.
<신 설>	14. <u>보호구역 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업무</u>	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5. <u>그 밖에 실내 다른 과장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관련 사항</u>	7. <u>국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의</u>	<삭 제>
		8. <u>국방부 소관 유희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,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</u>	<삭 제>
		<신 설>	9.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

⑰ 국유재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(생 략) 2. 국유재산의 취득·처분(매각은 제외한다)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3. ~ 5. (생 략) 6. <u>삭제</u> 7. <u>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</u> 8. <u>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</u> 9. <u>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</u> 10. <u>삭제</u> 11. <u>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</u> 12. <u>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</u> 13. <u>환경보전시설의 설치·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·조정</u>	시설 이전 협의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⑰ 국유재산과장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국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국방부 소관 유휴 국유재산 가치향상 정책 연구,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개발 등에 관한 사항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	14. 삭제 ⑱ (생 략) ⑲ 군소음보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·제도 정비 2. 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·운용에 관한 업무 3. 소음·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 4.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·시행 5.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·조정 6.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7.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.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 9. 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·운용·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 10. 주민 보상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	<삭 제> ⑱ (현행과 같음) ⑲ 환경소음팀장----- -----. 1. <u>군 환경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시행</u> 2. <u>국방·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</u> 3. <u>군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정책 수립</u> 4. <u>자연보호 및 생태계보전활동 정책 수립</u> 5. <u>군 유해환경작업장 시설 및 환경 개선 정책 수립</u> 6. <u>환경보전시설의 설치·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검토·조정</u> 7. <u>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령·제도 정비</u> 8. <u>소음영향도의 조사 및 조사 기준 수립·운용에 관한 업무</u> 9. <u>소음·진동 관련 정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업무</u> 10. <u>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의 수립·시행</u>
--	---	--	--

11. <u>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</u>	11. <u>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수립·조정</u> 12. <u>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 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</u> 13. <u>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 14. <u>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및 소음관리에 관한 업무</u> 15. <u>소음피해 보상금의 편성·운용·결산 및 검사 등에 관한 업무</u> 16. <u>주민 보상 관련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 및 민원 업무</u> 17. <u>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 협정에 따른 소음저감분과위원회의 운영</u>
제18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「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27조에서 “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<u>군인권 개선추진단장·법무관리관·감사관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을 말한다.</u>	제18조(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<u>법무관리관</u> ----- ----- -----.

국방부령 제104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국방부령 제104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군소음보상팀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군소음보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국유재산환경과장이 분장한다.	<삭 제>